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코로나 19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2015년 이후 메르스 확진자/격리자 데이터 수집 관련

1. 2015년 이후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관련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관련

- 2015년 이후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수 (명)

구분	2018
확진자수	1
격리자수	21

- 확진자 및 격리자와 관련하여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

A. 확진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 연락처, 직업·직장명

A. 격리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 연락처, 직업·직장명

- 확진자 및 격리자 개인정보의 수집 주체 기관 / 보관 주체 기관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관할 보건소에서 수집 및 보관

2. 2015년 이후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자 정보를 현재 폐기했는지 여부

A. 폐기하지 않음

- 폐기하지 않았다면 데이터의 관리 기관

A. 질병관리본부 및 관할 보건소

- 폐기를 했다면 폐기 시점 및 폐기 방법

A. 해당사항 없음

■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확진자 접촉자 데이터 수집 관련

1.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데이터 집적 위치에 대해

- 지자체 역학조사관이 수집/분석한 확진자 및 접촉자 데이터 집적위치

A. 해당 지자체

- 질병관리본부가 수집/분석한 접촉자 및 격리자 데이터 집적위치

A. 질병관리본부

2. 특정 환자의 동선이 아니라 감염 경로나 이동 패턴에 대한 분석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는지

A. 동선, 감염경로, 이동 패턴 분석을 위해 통신사로부터 해당 번호의 위치정보(GPS)를 제공받음

-만일 그렇다면 개인의 위치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A. 통신사로부터 받은 위치정보(GPS)를 바탕으로 방문 지역 및 장소, 이동 동선 확인

3.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에게 어떠한 설명이 이루어지는지

- 예를 들어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확진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 제기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지?

A. 역학조사 시행 전 대상자에게 '역학조사 사전고지' 수령

- 이와 관련된 지침이 있다면 공개

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4. 확진자 동선 파악 후에 접촉자 추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A. 먼저 환자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전파 가능 기간 동안의 동선과 방문 장소를 파악하고 환자의 진술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확인 및 보안을 위해 필요시 휴대폰 위치정보, 카드 결제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환자의 동선, 장소별 방문자를 조사한 후 접촉자로 관리함

- 예를 들어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시점에 신용카드 혹은 교통카드를 사용한 내역 및 신원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는지?

A. 필요시 시행함

- 만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카드(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용명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자에 대한 노출력 등 역학조사가 이루어짐

- 혹은 확진자가 있던 지역의 기지국에 유사한 시점에 접속한 사람들의 기지국 접속내역 및 신원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는지? 해당사항 없음

- 만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사항 없음

- 그 외 접촉자 추적을 위해 어떠한 방식이 사용되는지? 해당사항 없음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확진자/접촉자 데이터 활용 관련

1. 동선공개와 관련해 확진자별 공개가 아니라 감염 우려가 있는 특정 장소와 시간의 목록만을 모아서 공개해도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자체별이 아닌 중앙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 특정 장소와 시간의 목록만을 모아 공개하지 못할 공공보건 관점의 이유가 있는지?

A. 감염병의 확산 및 전파방지를 위해서는 추가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확진환자 방문 장소와 동선을 신속하게 공개하여 해당 장소에 노출된 접촉자를 빠르게 찾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주관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위험도를 평가하여 특정 장소를 포함한 이동 동선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임. 해당하는 장소와 시간을 목록의 형태로 공개하는 방식도 가능한 형태임.

■ 2020년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의 확진자/접촉자 데이터 관리 관련

1.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등이 수집한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 확진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기 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해 통신사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의 항목

- 데이터 폐기시점으로 잡은 코로나19 상황 종료에 대한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A.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름

확진자의 동선 파악을 위해 통신사에서 조사대상자의 휴대폰 번호에 대한 위치정보, 금융회사에서 카드 사용명세 정보를 받음